

1. 개정이유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개정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재가급여의 통합적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이용과 장기요양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자에게 적용할 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별 월 한도액의 일정부분을 가산한 만큼의 급여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함(제13조제7항제3호)
- 나. 안 제13조제7항제3호의 월 한도액 추가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도록 함(제13조제10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

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:
등급별 월 한도액의 10%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. 단, 추가 산정된 부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.

- ⑩ 제7항제3호의 월 한도액 추가산정 및 지급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.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95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부칙 제3조 중 “제38조의2에”를 “제34조의2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) ① ~ ⑥ (생 략)	제13조(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. 다만, 천재지변, 수급자의 입원·사망, 주·야간보호기관의 폐업·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.	⑦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<u>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합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: 등급별 월 한도액의 10%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. 단, 추가 산정된 부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.</u>
⑧·⑨ (생 략)	⑧·⑨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⑩ 제7항제3호의 월 한도액 추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95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부칙 제3조(주·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적용례) <u>제38조의2</u>에 따른 지원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·야간보호기관에서 특장차량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	<u>가산정 및 지급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.</u> 제3조(주·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적용례) <u>제34조의2</u>에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-